

치매공공후견사업

지원대상



-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
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
 -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
 -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
- ※ 단,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

-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
-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: 월 20만원(월 최대 40만원)
- ※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

신청방법



-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
(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: 1899-9988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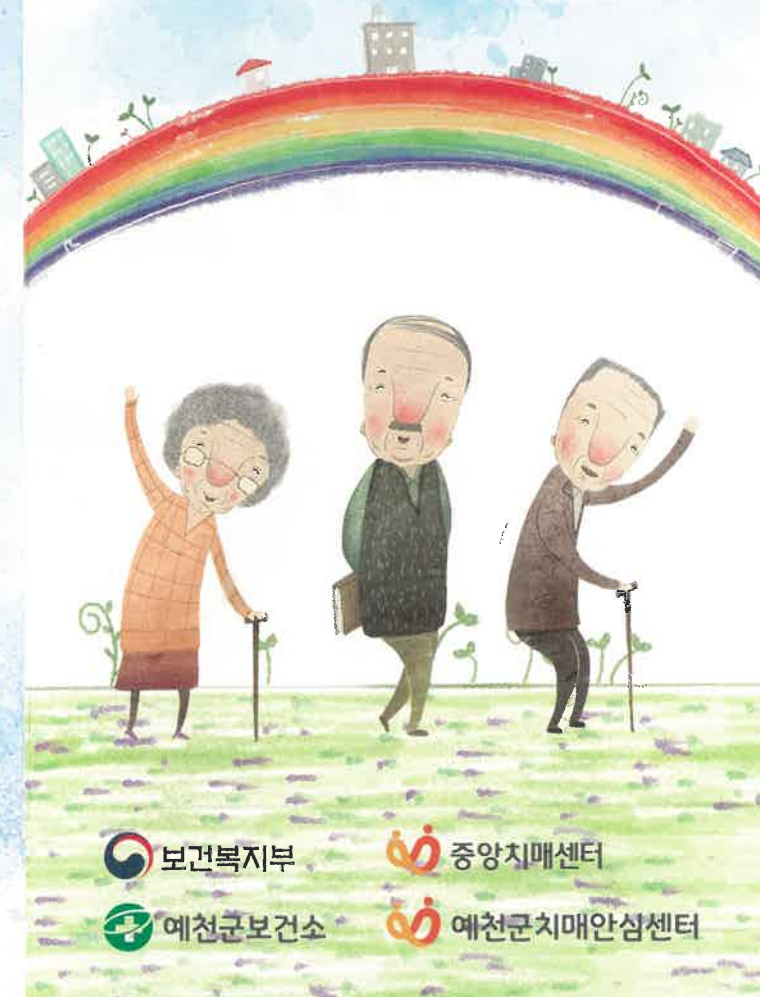
만일 치매에 걸렸는데...
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
나의 경제적, 법적 권리는
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?

걱정하지 마세요!
이제 치매공공후견사업이
홀로 계시는 치매어르신께
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!!

치매공공후견 상담문의는
1899-9988
치매상담콜센터로!



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



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?

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
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
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
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후견심판청구 절차, 후견인 연계,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
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

• 관련 근거 : 치매관리법 제12조의3, 민법 등

치매관리법 제12조의3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
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
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
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
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
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
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
경우
2.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
없는 경우
3.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
한 경우

성년후견제도



장애, 질병,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
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
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
지원하는 제도